2004. 2. `조례안

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의회운영위원회

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4-3

발의년월일 : 2004. 2. 5.
제 안 자 : 운영위원장

1. 개 정 이 유

○ 2004. 1. 9일자로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가 신설되는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·시행됨에 따라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공포된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○ 산업개발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중 2004. 1. 9일자로 신설된 "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"를 삽입하고자 함.

3. 참 고 사 항

○ 지방자치법 제50조, 제51조, 제54조
○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
○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

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"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"를 "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·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
① ~ ②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농업기술센터·보건소·개발사업단·여성회관·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·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	나. ---------- ----------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·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